

「대학원,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」

<개정 2020. 10. 1.>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울산대학교 대학원,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6. 2. 1.>

제2조(적용범위)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 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지급자) 각종 장학금의 수급자수와 금액은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,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 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<개정 2026. 2. 1.>

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향
2.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지급기준
3. 기타 장학에 관한 필요한 사항

제5조(장학금의 지급구분) 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개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대학원에서 관장하는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단, 외부장학 및 의과학 일류화 장학의 경우 등록금 한도를 초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장학금운영지침에 따로 정한다.<개정 2008. 11. 1, 2012. 3. 1, 2017. 3. 1.>

제 2 장 대학원 장학금

제6조(장학금의 종류) 대학원 장학금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세부사항은 대학원 장학별 운영지침에 따른다.<개정 2008. 11. 1.>

1. 일반장학금 및 성적우수 장학금
2. 우수신입생 장학금<신설 2008. 11. 1.><개정 2013. 9. 1.>
3. 국가기관 및 외부인사 또는 장학단체 장학금
4.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 장학금
5. 조교 장학금
6. 외국인 장학금
7. 특별 장학금

8. 산학 장학금

9. 공무원 장학금<신설 2008. 11. 1.>

10. 공공기관 장학금<신설 2016. 10. 1.>

11. 글로벌 장학금<신설 2026. 2. 1.>

제7조(일반장학금 및 성적우수 장학금) ①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일반장학금을 지급한다.<개정 2012. 1. 1.>

② 일반장학금 수혜학생의 학과별 배정인원은 대학원장학금운영지침에 따른다.<개정 2012. 1. 1.>

③ 일반장학금 수혜자는 연구 및 학부생 교육 보조 의무를 지며, 해당 사항은 각 학과(부)의 내규에 따른다.<신설 2012. 1. 1.>

④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성적 우수 신입생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08. 11. 1, 2012. 1. 1, 2013. 9. 1.>

제8조(국가기관 및 외부인사 또는 장학단체 장학금) 학과지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각 기관 및 외부인사 또는 장학단체 장학금은 장학금 수혜가 없는 학과에 배정하며 순위는 학과 순번에 따른다.

제9조(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 장학금) ①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직원(무기계약직 포함),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및 울산과학대학의 정규직 교직원 또는 그 직계자녀 및 배우자가 진학할 경우에는 등록금의 70%를 감면한다. 단, 의학과는 직계자녀 및 배우자만 감면한다.<개정 2017. 3. 1.>

② 울산대학교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직 직원 본인이 진학할 경우에는 등록금의 70%를 감면한다.<개정 2011. 8. 1, 2020. 9. 1.>

제10조(조교 장학금) 조교에는 교육조교와 연구조교를 두며, 그 장학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.

1. 삭 제<2012. 1. 1.>

2. 기초과목, 실험실습 및 교양과목을 지원하는 교육조교를 따로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대학원장학금운영지침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한다.<개정 2008. 11. 1, 2012. 1. 1.>

3. 연구조교는 지도교수가 연구비에서 등록금의 3/10을 지원하면 교비에서 등록금의 1/2을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08. 11. 1.>

제11조(외국인 장학금) 외국인 장학금은 외국인 입학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개정 2014. 2. 1, 2012. 3. 1.>

제11조의 2(산학 장학금) 산업체 및 자영업 종사자에게 산학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개정 2008. 11. 1, 2013. 1. 1.>

제11조의 3(공무원 장학금) 공무원 및 초·중등 교사에게 공무원장학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신설 2008. 11. 1.><개정 2013. 1. 1.>

제11조의 4(공공기관 장학금)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공공기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신설 2016. 10. 1.>

제12조(특별장학금) 대학원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원생 또는 대학원위원회에서

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장학생 선발 및 수혜제한)〈신설 2008. 11. 1.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내장학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.〈개정 2014. 2. 1.〉

1. 직전학기의 성적이 3.00 미만인 자(신입생 제외)
2. 석사 : 4개학기, 박사과정 : 6개학기, 석·박사통합과정 : 8개학기를 초과한 자

제 3 장 특수대학원 장학금

제14조(장학금의 종류) 특수대학원의 장학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장학금 운영지침에 따른다.〈개정 2009. 5. 1.〉

1. 일반장학금 및 성적우수 장학금
2. 국가기관 및 외부인사 또는 장학단체 장학금
3.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 장학금
4. 조교 장학금
5. 특별 장학금
6. 공공기관 등에 재직하는 학생의 학비감면
7. 외국인 장학금〈신설 2009. 5. 1.〉

제15조(일반장학금 등) 삭 제〈2009. 5. 1.〉

제16조(공공기관 등에 재직하는 학생의 학비감면)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학생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〈개정 2011. 8. 1.〉

제 4 장 대학원 의학과 장학금

제17조 삭 제〈2006. 9. 1.〉

제18조 삭 제〈2006. 9. 1.〉

제19조 삭 제〈2006. 9. 1.〉

제20조 삭 제〈2006. 9. 1.〉

제 5 장 전문대학원 장학금

제21조(장학금의 종류) 전문대학원의 장학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대학원 운영지침에 따른다.〈신설 2026. 2. 1.〉

1. 일반장학금 및 성적우수 장학금〈신설 2026. 2. 1.〉
2. 국가기관 및 외부인사 또는 장학단체 장학금〈신설 2026. 2. 1.〉
3.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 장학금〈신설 2026. 2. 1.〉
4. 글로벌 장학금〈신설 2026. 2. 1.〉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(경과조치) 이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.
- 3.(폐지규정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, 대학원의학과장학금지급규정, 교육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, 산업경영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2002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2002학년도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0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제5조(장학금의 지급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제5조(장학금의 지급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.